

『서울특별시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
일부개정조례안』에 대한
제안 설명

□ 존경하는 이영실 위원장님!

그리고 선배·동료 의원님 여러분!

안녕하십니까?

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출신 김화숙 의원입니다.

『서울특별시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
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데 대해
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.

□ 지금부터

『서울특별시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
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

□ 먼저 조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,

상위법 「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」 개정에 따라
기부식품 등 제공사업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조례에 반영하여
면밀한 계획 수립 및 체계적 사업 추진이 필요합니다.

□ 이에,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시책 수립 및 시행에 따른 사항, 보조금 지원, 교육·홍보, 평가 등 식품등 기부 활성화를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. 또한 기부식품 등 제공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어려운 이웃에 나눔활동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.

□ 존경하는 이영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!
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
본 의원의 조례 개정 취지를 이해하셔서 보건복지위원회
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리며,
이상 조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